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6월 2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해엽 안전교통국)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집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9조)
-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제19조제5항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테레사)

개정 배경 및 취지

- 영등포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본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총 350명

(18개 동별 구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해임 및 해촉)은 현행 조례에서 “단원”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해촉(해임) 규정을 “단장”에게까지 확대함.
  - 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사망, 소재불명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해임하여 직무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며,
  - 단장의 책임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0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임규정 신설은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소집 등)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소집수당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신설함.
  -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근거하여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수당은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 단가로 규정함.
-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용어(장제→장례)를 정비하고,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2024. 2. 20.)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서(안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 유족대표자 선정서(안 별지 제2호서식)를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의 해임규정 및 소집수당 신설 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방재단의 단장은 방재단 대표 및 업무 총괄, 방재단원 지휘 및 소집, 활동계획서 작성 등 방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단장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단장의 청렴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집수당을 신설하였고, 수당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2호
----------	-------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소집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9조)
- 나.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의견반영 보완완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5. 1. ~ 5. 2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임)**”을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 등이**”를 “**구청장은 단장이**”로,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를 “**해임할 수 있고, 단원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단원이 사망**”을 “**사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단원이 구**”를 “**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활동하는데**”를 “**활동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단원이 직무**”를 “**직무**”로 한다.

###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집)**”을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집수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을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사망한**”을 “**재해로 사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자 선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요양 [ ] , 장해 [ ] , 장례 [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관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아래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 족 대 표 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망단원과의 관계 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b>위 임 자</b>					
1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의
	주 소				
2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의
	주 소				
3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의
	주 소				
4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의
	주 소				
5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의
	주 소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 등 신청용) 1부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 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 6. (생략)
-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 8.·9. (생략)
- ③ ~ ⑤ (생략)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② -----각 호와 --.

- 1. ~ 6. (현행과 같음)
- 7. 감염병 -----
- 8.·9.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집수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생 략)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 ② ~ ④ (생 략)

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
  3. 장제보상 -----  
----- 재해로 사망한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같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시에 대표자 선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⑥ (생략)

⑤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

- 1. ~ 3.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내역

○ 자율방재단소집수당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10,579원)\*4시간\*350명=14,811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왕혁진
연 락 처	02-2670-3064